

휴학, 제적, 복학

1. 휴 학

가.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2선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,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) 일반 휴학 :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

2) 학기 중 휴학 : 등록 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에 휴학하는 것

단,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 : 질병 및 군복무로 인한 휴학(종합병 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군입영통지서 첨부)

나. 휴학기간은 석사 4학기, 박사 6학기, 석·박통합과정 8학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(휴학원은 1년간 유효함). 단,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.

다.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시에는 입영영장사본 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제 적

등록기간 중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학연한(석사 4년, 박사 6년, 석·박통합과정 8년)이 초과된 경우에는 제적된다.

※ 제적된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복적(제적 후 1년이내에 한하여 1회) 또는 재입학이 가능함

3. 복 학

휴학자의 복학은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1개월 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